

[별표.1]

재물(1종)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

1. 손해사정 보수표

손해사정금액	요율(%)	기준액(원)
3백만원 미만 및 면책건	기본료	500,000
3백만원 이상 ~ 5백만원 미만		580,000
5백만원 이상 ~ 1천만원 미만		660,000
1천만원 이상 ~ 2천만원 미만	5.06	660,000
2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	4.18	1,012,000
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	3.74	1,254,000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2.88	1,870,000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2.20	2,880,000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1.95	4,400,000
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1.61	5,850,000
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1.27	8,050,000
10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	0.89	12,700,000
20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	0.82	17,800,000
3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	0.73	24,600,000
5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	36,500,000 + 50억원 초과금액 × 0.4% 가산	
100억원 초과	56,500,000 + 100억원 초과금액 × 0.2% 가산	

2. 수수료 기준

- 가. 화재, 폭발, 풍수재, 농기계(자차)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%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손 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나.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손해사정금액”으로 정하여 상기 수수료 기준표의 요율을 적용한다.
다만, 손해사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율 5백만원이상~10백만원미만의 기준액을 적용한다.
- 다. 이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중 산출된 수수료가 구간별 기준액(기본료) 보다 적을 경우 구간별 기준액을 적용한다.
- 라. 가축재해보험은 손해액의 7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.
다만, 폭염사고 건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0%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하며, 가축휴지보험특약의 경우 손해액의 3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 한다
- 마.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차량의 사고는 손해액의 7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.
- 바.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% 미만인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액 확정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.
- 사. 이 수수료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.
- 아.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(특별약관 포함)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“손해사정금액”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, “위탁자”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(또는 내용)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3. 집단사고 수수료 기준

- 피해자 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.

구 분	할증율	비 고
10 ~ 30인 미만	손해사정 수수료의 1.2배	-
30 ~ 200인 미만	손해사정 수수료의 1.5배	-
200인 이상	손해사정 수수료의 2배	-

*주) 아파트 낙뢰사고 제외

4.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

○ 적용대상 및 수수료 기준

대상	기준액
• 가계성 도난사고	50만원
• 홀인원보험, 골프용품손해사고	50만원
• 가축재해보험 "말"보험	66만원
• 가축재해보험 "소"보험	10만원
•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	66만원
•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	50만원
• 농기계보험 간편 조사 건	5.4만원
• 가축재해보험 "소" 보험 간편 조사 건	3.5만원

* 주) 풍수해보험은 별도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.



5. 신종보험 수수료 기준

가. 대상 : 재물, 금융보험(BBB, 전자금융배상책임), 신원보증보험 등 “수탁자”가 신종보험 수수료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.

나. 수수료 산정 (Time base)

- 조사자 경력별 적용

조사자 경력	시간당 수수료
5년 미만	50,000원
10년 미만	70,000원
10년 이상	90,000원

-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다.
- 수수료 산정의 시간은 현장조사,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.
- 건의 난이도, 노력도, 성과에 따라 해당 “시간당 수수료기준”的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.

-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.
-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.
- 보수 5백만원 초과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.

6. 보험사기 조사건 성과급

○ 대상 및 지급기준

구 분	대 상	지급기준
우수조사	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, Moral 사고 입증 (단, 청구포기 징구 및 객관적인 조사과정 결과 근거로 함)	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.
보험사기	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입건, 구속, 기소되어 형사판결 또는 민사판결로 보험사기 확정된 건	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10~2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

